

[일련번호 : 1]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빙상경기연맹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조직 운영,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맹 「규약」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연맹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연맹 행정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은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2조(적용)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정한다고 되어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에 의거, 연맹은 업체로부터 각종 계약을 통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계좌지출 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자료를 계좌이체 지출에 따른 회계증빙자료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연맹은 원천징수의무자로 각 대회를 진행하며 대회 진행요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맹의 모든 예산 집행 시 본회 「회계규정」 제42조(지출원인행위), 제4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5항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의사를 결정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맹은 각종 보조금 집행 등 예산 회계 업무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이 3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 가. 회계 증빙서류 미비

연맹은 본회로부터 각종 대회 개최 보조금을 지원받고, 업체들과 대회 내 제반사항에 관한 거래를 진행하여 현금 계좌이체로 거래대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연맹은 업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자료를 지출 회계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하나, 예산 집행 시 해당 증빙서류 없이 회계업무를 진행하였다. 지출 증빙자료가 미비된 채 거래된 목록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회계 증빙서류 미비 목록**

연번	사업명	업체명	대표명	품목	금액(원)
1	제103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A업체	○○○	청소	***,***
2	제103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B업체	○○○	방역	***,***
3	제103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C업체	○○○	전산	***,***
4	제103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C업체	○○○	전산	*,***,***
5	제103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D업체	○○○	현수막	** ,***
6	제101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C업체	○○○	전산	*,***,***
7	제101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C업체	○○○	전산	***,***

## 나. 인건비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연맹은 각종 대회를 진행하며 대회 진행요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12만 5천원(기타소득 과세 표준 5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연맹은 관련 법령에 의거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인건비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고 지급된 목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인건비 원천징수 미이행 목록

연번	사업명	대상자	활동내용	금액(원)
1	제103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2	제103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3	제103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4	제103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5	제101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6	제101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7	제101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8	제101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9	제101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10	제101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11	제101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12	제101회 동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	전산	***,***

## 다. 지출품의 미이행

연맹은 모든 예산 집행 시 집행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여야 하나, 각종 사업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지출품의 절차 없이 지출결의서와 해당 증빙자료(계약서 등)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처리에 관한 관리·감독하는 등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관계기관 의견]

연맹은 영세업체와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등 회계 증빙서류 요구하는 사정의 어려움을 주장하였고, 추후 보조금 집행 시 해당사항을 유의하여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각종 대회의 진행요원으로부터 적은 인건비에 불만 민원을 받았고, 원천징수로 인해 더 적어지는 인건비로 인해 진행요원 수급에 어려움을 주장하였으나, 원천징수는 오히려 근로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관련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출품의는 본회로부터 양식을 받아 이행하며, 추후 보조금 집행 시 연맹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 [조치사항] 경기도빙상경기연맹회장은

연맹의 각종 보조금 집행 시 모든 예산은 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회계 지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구비된 지출결의서에 의해 집행하는 등 집행절차와 회계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인건비 지급 시 인건비의 과세최저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경기도체육회

## 개선조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빙상경기연맹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맹 「규약」으로 정하고 사업수행과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인 각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sup>1)</sup>,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sup>2)</sup>,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sup>3)</sup> 등에 따라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 1)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외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2)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본 연맹 및 시·군빙상경기연맹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위해 이사회는 자문기구로서 각종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맹은 선발위원회만 구성하여 전국대회 출선선수 선발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한체육회 및 대한빙상경기연맹을 비롯한 본회에서도 전문체육 발전과 육성을 위해 경기력향상위원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은 제정하였으나 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않아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있다.

#### [조치사항] 경기도빙상경기연맹회장은

연맹 「규약」에 따라 이사회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선발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랍니다.

---

3)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이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 권고조치

[제 목] 회계관계직원 재정정보증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빙상경기연맹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맹 「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sup>4)</sup>에 따라 연맹은 회계 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정보증)<sup>5)</sup>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은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정보증에 가입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4)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5)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재정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체육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협회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직원에게 해당하는 사무장, 사무국장, 회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빙상경기연맹은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보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빙상경기연맹회장은

직무관련 재산상 사고에 대비하여 연맹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소신과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